Samil PwC Assurance Monthly Newsletter

January 2022

pwc 삼일회계법인

Contents

GAAP

04 MM상품 투자 시 분류 및 회계처리 안내 (금융감독원)

GAAS

07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금융감독원)

09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11 "2021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TAX

16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 공개 (Tax News Flash)

21 2021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Tax News Flash)

Governance

26 이사회 운영을 위한 제언

Hot Topic

32 또 하나의 세상, 메타버스가 다가온다

01

GAAP
회계

GAAP

MM상품 투자 시 분류 및 회계처리 안내 (금융감독원)

1. 회계처리 쟁점 및 현황

□ **(쟁점)** 기업이 **단기 자금운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MMT, MMW, MMF의 분류와 **회계처리**가 각각 **상이**

- 동 상품들의 구성자산은 일반적으로 잔여만기 3개월 미만의 **예금** 및 **기업어음**과 국공채 등 **우량 채권**으로 **가치변동**이 **미미**하고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
- MMT의 경우 보유 목적 및 상품의 실질을 고려했을 때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허용**해 달라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
- 특히, K-IFRS 적용 기업은 MMT 이외에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도 MMT를 종속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 존재

+ MM상품의 특성 및 회계처리 현황

구분	**MMT** (Money Market Trust)	**MMW** (Money Market Wrap)	**MMF** (Money Market Funds)
별도 실체 여부 판단	신탁을 **별도 실체**로 봄 (특정금전신탁)	별도 실체로 보지 않음 (투자일임계약)	펀드를 **별도 실체**로 봄 (단기집합투자기구)
운용 주체 및 방법	• **고객 지시**에 따라 신탁회사가 운용	• 투자일임계약으로 투자자 **계좌**에서 **직접 거래**발생 • 자산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있음	•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운용 • **만기**에 펀드성과에서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 보수 등을 차감 후 **성과지급**
회계처리	(K-IFRS) • 투자자가 직접 운용을 지시(힘의 보유)할 수 있으므로 MMT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보아,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투자**로 회계처리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함 (K-GAAP) • **투자자**가 운용 지시권을 행사하여 신탁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거래의 실질은 회사가 직접 자금을 운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K-IFRS 및 K-GAAP) •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 구성자산 중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은 현금성자산으로, 그 외는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분류 및 측정하므로 사업모형가, SPPI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K-IFRS 및 K-GAAP) • 펀드를 **금융상품**으로 봄 • 만기가 존재하므로 채무상품으로 보고 **사업모형평가, SPPI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함 • MMF는 그 특성상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사업모형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원리금이 투자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SPP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

⋯› MM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따라 **재무제표 표시,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등의 **의사결정**이 **상이**

2. 결론

□ **(MMT) K-IFRS 적용 기업**은 연결·별도(개별)재무제표 작성시 MMT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 회계처리와 **간주별도실체**로 보는 회계처리 방법을 **모두 적용 가능**

* 별도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을 그대로 일관되게 적용 필요

- MMT **이외 종속회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개별재무제표에서 MMT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❶ K-IFRS 적용시 MMT는 간주별도실체에 해당하고 투자자가 지배하므로 MMT 이외 **다른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 **개별**재무제표에 **MMT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MMT를 **간주별도실체**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와 **실질**이 **동일**하게 반영됨
- 결과적으로 정보이용자는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하게 회계처리된 개별재무제표 활용이 가능하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음**

❷ K-IFRS 적용 기업이 MMT **이외 종속회사를 보유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MMT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와

- MMT를 간주별도실체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모두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

* 다만, 종속회사 관련 주석공시사항에서 차이 발생

❸ MMT 이외 종속기업을 보유한 **K-IFRS** 적용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도 MMT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거나 **간주별도실체**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모두 인정**

- MMT 금융상품의 특성상 **투자자**가 **운용대상** 및 **방법**을 **지시**하고 투자자 자금이 단독 운영되는 **단독투자계약**인 점을 감안할 경우
- **경제적 실질**이 투자자가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과 **동일**하므로 직접 보유 회계처리도 **목적 적합한 정보**에 해당
- **정보이용자**는 기업의 MMT 투자 실질을 연결·별도(개별)재무제표를 통해 **충분한 정보 입수 가능**

□ **(MMW·MMF) 현행 회계처리***를 **유지**하되, MMF는 **구성자산**이 모두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요건**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문단 7]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회계처리** 가능

* MMW: 직접 보유, MMF: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금융감독원 사이트 참조: MM상품 투자 시 분류 및 회계처리 안내

02

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GAAS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금융감독원)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http://acct.fss.or.kr)하고 공개하여 정보 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함

□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

+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개)

공개 시기	'19년 12월	'20년 8월	'21년 6월	'21년 12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18년~'19년	'15년~'17년	'20년	'11년~'14년	'11년~'20년
공개 사례 수	29	37	15	27	108
❶ 매출·수익인식	4	12	5	4	25
❷ 재고자산	3	1	–	–	4
❸ 지분·금융상품	4	6	5	4	19
❹ 유·무형자산	4	4	1	–	9
❺ 기타자산·부채	7	5	2	8	22
❻ 주석미기재	2	3	1	4	10
❼ 기타	5	6	1	7	19

2. 주요 감리 지적사례 요약

□ **매출채권**

- A사는 다수의 게임 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지분·금융상품**

- B사는 **각자 대표이사가 각각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관계회사투자(지분법)로 미인식
- C사는 재무적투자자로서 타사 인수에 참여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약정수익 보장을 위해 이들의 보유 지분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했음에도, 파생상품자산(부채)를 미계상

□ **기타자산·부채**

- D사는 사채업자 등의 **가장납입(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거짓자료로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며** 사채를 반환하고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
- E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과거 미납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부채 인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납부시까지 미지급법인세 미인식

□ **주석 미기재**

- F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와 **형제관계인 '갑'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G'사의 종속회사 'H'사와 'F'사의 종속회사 'I'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함에도, 관련 거래를 주석에 미공시

* 친족 관계인 X와 Y와 관련하여, X가 한 기업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Y가 다른 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그 두 기업은 특수관계에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 및 사례5)

3. 향후 계획 등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심사·감리 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GAAS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1. 배경

□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18년 11월) 4년차임에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 절차 등 위반 사례 발견

□ '21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52사) 대비 177% 증가함

2. 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주권상장회사[1]
대형비상장주식회사[2]/금융회사[3]</th><th colspan="2">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th></tr>
<tr><td>선임기한</td><td colspan="2">• 감사위원회 의무설치법인
-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21. 12. 31)
• 자산총액 2조 미만
-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22. 2. 14)</td><td colspan="2">• 최초 외감대상 회사[4]
-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22. 4. 30)
• 그 외
-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22. 2. 14)</td></tr>
<tr><td>선임대상 사업연도</td><td colspan="2">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td><td colspan="2">1개 사업연도</td></tr>
<tr><td>감사인 자격</td><td>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td><td>회계법인</td><td colspan="2">회계법인 / 감사반[5]</td></tr>
<tr><td>선정절차</td><td colspan="2">• 감사위원회 설치(의무·자율 포함) 회사
- 감사위원회가 선정
• 그 외
-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td><td>• 감사(감사위원회 자율설치시 감사위원회)가 선정
•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td><td>• 감사가 선정
•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td></tr>
<tr><td>선임보고</td><td colspan="2">감사인을 선임후 2주 이내
(감사인 변경여부 무관)</td><td colspan="2">감사인을 최초 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td></tr>
</table>

1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1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4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5 신규 주권 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

3. 주요 위반 사례

□ **(선임기한 위반)** '19년 설립된 A사(12월 결산법인)는 '19년 말 자산총액이 800억 원이라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되었고, '20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20년 4월 29일 체결함

⋯› '20년 말 자산총액이 1,050억 원이라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가 된 A사는 계속감사 체결기한이 초도감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21사업연도 계속감사계약을 '21년 4월 30일 체결하여 **계속 감사인 선임기한('21년 2월 14일) 위반**

□ **(선정절차 위반)** '19년 말 자산총액이 900억 원인 비상장주식회사 B사는 동 사의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0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 B사는 '20년 말 자산총액이 1,100억 원이 되어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되었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동 사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1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하는 선임 절차 위반**

GAAS

"2021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1. 개요

금융감독원은 2021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7가지를 안내하고 향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임

2.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❶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제출대상</td><td>주권상장법인,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td></tr>
<tr><td>제출서류</td><td>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td></tr>
<tr><td>제출처</td><td>• 상장법인: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 비상장법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td></tr>
<tr><td>제출시점</td><td>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일반회사</th><th>회생절차 진행회사</th></tr>
<tr><td colspan="2">별도(개별)재무제표</td><td>정기주총일 6주 전*</td><td>사업연도 종료 후 45일</td></tr>
<tr><td rowspan="2">연결
재무제표</td><td>K-IFRS 적용</td><td>정기주총일 4주 전*</td><td>사업연도 종료 후 60일</td></tr>
<tr><td>K-IFRS 미적용</td><td colspan="2">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2조 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td></tr>
</table>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 전(별도) 또는 4주 전(연결)</td></tr>
</table>

:

▫ **(미제출 시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함

▫ 주요 위반사례

위반원인	세부내용
기한 계산 착오	20XX년 3월 30일(화)이 정기주주총회일로, 법정기한(6주 전)인 20XX년 2월 15일(월)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XX년 2월 16일(화)에 제출 *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주 전(별도), 4주 전(연결)을 계산
정기주총 시기 변경	20XX년 3월 26일(금)에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정하여 계산된 제출기한 2월 11일에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나, 1일 앞당겨 3월 25일(목)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
법규 인식 미비	금융회사가 신외감법에 따라 자산규모·상장여부와 무관하게 제출대상이 되었으나,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산 1,000억 원 미만 비상장법인이므로 제출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미제출
파일 업로드 미완료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접수처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미제출

❷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1회계연도는 자산 5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 **(검토)** 감사인은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 **(감사)** 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 회사는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하며,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한 뒤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 있음

❸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 금감원은 '21년 6월 '22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하였으며 '21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예정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중점심사 회계이슈	유의사항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내·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 수행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K-IFRS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거래금액 및 채권 잔액 등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공시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각 범주별로 적정하게 인식 및 후속 측정하고, 금융위험에 관한 질적·양적 정보 등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보고부문 및 주요 지역·고객 등에 대한 정보 등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❹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상장회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참고] 핵심감사사항(KAM)

▫ **(적용대상 및 시기)** **'20년 12월 15일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부터 **전체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적용

▫ **(의미)** 회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정보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하도록 하고, 그 선정 이유, 왜곡표시 위험, 수행한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함

⋯›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이해도** 및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

▫ **(선정 및 기재)** **3단계**에 걸쳐 진행

[1단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청의 불확실성, 당기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효과 등

[2단계] 감사인의 유의적 주의가 필요한 사항 파악 및 **KAM 선정**

[3단계] **감사보고서**에 ① 주요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와 ②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기재

:

[유의사항]

회사(지배기구)는 KAM **선정 시부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사업보고서의 감사인에 관한 사항'에도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❺ 회계오류 예방 노력 및 과거 오류 발견 시에는 신속 정정

□ 회계결산 및 기말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재무제표 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

[유의사항]

- (회사)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는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과거 회계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 내용을 충분히 공시
- 변경된 감사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당기감사인과 회사 경영진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계오류 여부를 판단하고, 공시 자료 수정 여부 등을 결정

❻ 외부감사 보수·시간 공시 및 관리 철저

□ 외부감사 보수 및 시간은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 기재하고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회사)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보수 및 시간을 계약과 실제 수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감사 투입시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감사보수와 시간을 관리
- (감사인) 외부감사 실시내용과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는 감사 보수와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공시

❼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지적사례' 및 '질의회신사례' 활용

□ 회사는 과거 감리 지적 사례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결산 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회사들이 결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결과 지적 사례를 정리하여 회계포탈에 게시
- 주요 질의회신 사례는 회계포탈(acct.fss.or.kr)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 공개

03

TAX

* 출처: Tax News Flash, 2021.12.29 / 2022.1.6

TAX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 공개 (2021. 12. 29)

1. 개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21년 12월 20일 디지털세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모델규정(Model Rules)을 발표함. 모델규정은 특정 국가(관할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 확정한 것임

모델규정은 과세조항 중 모기업이 저율과세 구성기업(연결대상 국외법인)의 추가세액을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과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 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기업들의 관할국으로 과세권을 이전하는 세원잠식비용 공제부인 규칙(UTPR: Undertaxed Payments Rule)에 중점을 두고 있음

글로벌 최저한세는 '23년 소득산입규칙(IIR)에 대한 전면시행, '24년에 비용공제부인 규칙(UTPR)을 시행할 예정이며, '22년 중 국내에서도 모델규정 도입을 위해 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2023년부터 적용 목표)**

필라(Pillar) 1.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5%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
연결매출액 7.5억 유로(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2. 주요 내용

▫ 개요

모델규정은 10개 장(Chapter)과 49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모델규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산입규칙(IIR)은 아래 단계에 따라 추가세액(Top-up Tax)이 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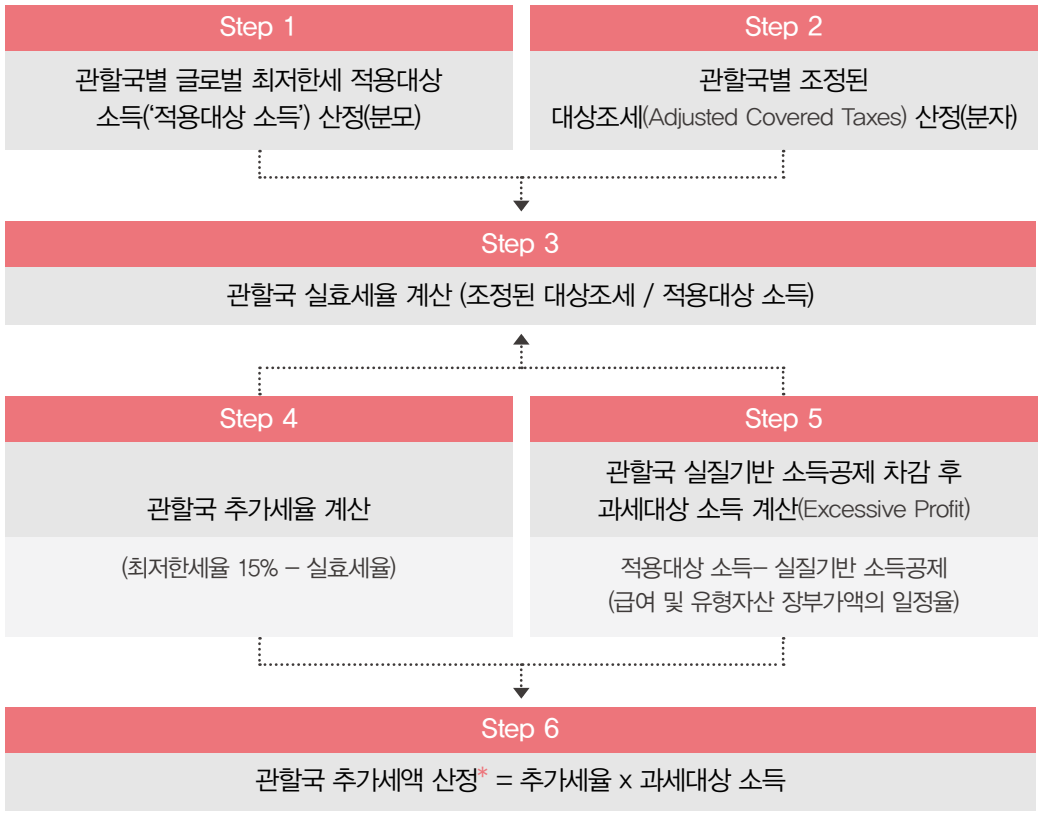

* 최근 3년 간 ① 평균매출액이 1천만 유로 미만 및 ② 평균 적용대상 소득이익이 1백만 유로 미만인 관할국가의 추가세액은 0으로 간주하여 적용 제외

▫ 적용대상 기업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기업이 적용 대상임. 반면,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및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적용 배제

▫ 소득산입규칙(IIR)에 따른 과세권 결정원칙

소득산입규칙(IIR)에 따라 추가세액을 납부할 납세의무자 / 과세권행사 국가는 최종모기업 / 해당 최종모기업 관할국을 시작으로 상위 모기업 / 해당 상위 모기업 관할국 순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예를 들어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소득산입규칙이 도입되지 않은 경우, 다음 상위 모기업 소재 관할국에서 소득산입규칙(IIR)을 적용하여 과세권 행사 가능

예외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의 중간모기업으로서 해당 그룹에 속하지 않는 제3자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부분소유모기업(Partially-Owner Parent Entity, 제3자 보유지분이 20%를 초과하는 중간모기업)의 경우, 그 부분소유모기업의 관할국에서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 추가세액을 과세

▫ 적용대상 소득

개별 구성기업의 적용대상 소득·손실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회계기준에 따라 산정된 순이익에 일정 금액을 가감하여 결정. 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 상 내부거래 제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요 조정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차감 항목:
  지분율 10% 이상 배당 소득, 지분법이익, 지분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국제해운이익 등
- 주요 가산 항목:
  지분법손실, 지분처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뇌물, 5만 유로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조세 비용 등

동일 관할국내 소재한 구성기업의 적용대상 소득·손실을 합산하여 관할국별 적용대상 소득 산정. 즉, 동일 관할지국 내 구성기업 간의 적용대상 소득과 손실은 통산하여 계산

▫ 조정된 대상조세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일정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

- 일시적 차이 반영을 위한 총 이연법인세 조정금액 ⋯› 포함
- 환급·공제되었으나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소로 처리되지 않은 대상조세 ⋯› 차감
- 3년 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 차감
- 당기법인세비용에 인식된 적격 환급가능 세액공제(4년 내 현금으로 환급가능)
  ⋯› 적용대상 소득 및 대상조세의 증가로 처리
- 그 외 세액공제 ⋯› 대상조세의 감소로 처리

수익·비용의 회계와 세무상 인식시점 차이로 인한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회계를 통하여 조정됨

- 이연법인세비용 산출 시 적용된 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높다면 이를 15%로 재계산
- 이연법인세부채 계상액 중 발생 후 5년 간 미실현된 일시적 차이(즉, 관련 유보가 익금산입되지 않아 세금 미부담 시), 발생연도로 소급하여 대상조세의 감소로 처리
  - 유형자산 즉시·가속 상각, 연구개발비용 등 일정 항목은 재계산 대상에서 제외

□ **실효세율**

관할국별 실효세율은 관할국별 조정된 대상조세를 적용대상 소득으로 나누어 산정. 즉, 관할국별 대상기업의 조정된 대상조세와 적용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관할국별로 계산

세율 변동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변동으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이전 회계연도의 실효세율이 재계산되면서 추가세액이 새롭게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당기 추가세액에 가산

□ **실질기반 소득공제**

추가세액 계산 시 적용대상 소득에서 '급여(인건비 성격의 제 급여·상여 등 포함, 사회보장세 등 준조세 포함)' 및 '유형자산 평균 장부가액(회계 상 기초 순장부가액과 기말 순장부가액의 단순평균)'에 대해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과세대상소득(Excessive Profit)을 산정. 시행 예정 첫 연도인 '23년의 경우 급여의 10%, 유형자산 평균 장부가액의 8%가 차감되며, 10년 간 매년 일정 비율이 감소되어 '33년부터는 5% 적용

□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

소득산입규칙의 보완 규정으로 적용.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추가세액이 납부될 국가가 없는 경우(예: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관할국 내 소득산입규칙 미도입 등),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관할국별 추가세액을 해당 관할국 내 개별 구성기업이 적용대상 소득을 배분비율로 안분하여 납부

□ **신고 및 경과규정**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적용대상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개별 구성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시행 첫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 표준양식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개별 구성기업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종모기업 또는 지정 구성기업이 대신하여 신고 가능함. 구체적인 신고양식, 행정지침 세부내용은 향후 발표될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체계를 통해 구체화 예정임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글로벌 최저한세의 세부 내용이 금번에 발표된 모델규정을 통해 확정되었으나, 새로운 과세체계인 만큼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함. OECD에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발표 예정인 주석서, 내년 중에 공개될 신고양식 및 세무 행정치침을 포함하는 이행체계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예정대로 도입 및 안착될 것으로 기대함

한국 정부도 '23년 시행 일정에 따라 '22년 중에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도 세법 개정안(통상 7월 말)에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령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경우 해외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전액 과세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구성기업(자회사)으로부터 배당 수령 시 이미 납부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공제·조정되어야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게 됨. 모델규정의 법제화 시 국내 세법과의 상호 관계와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내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편되어야 할 것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 대상국 모두 모델규정을 일관되게 도입 및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에 있어 각국의 세법이 다양하여 국제회계 기준 등에 기반하여 전 세계 공통의 과세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무측면에서도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하여 신뢰성이 높고 적시성 있는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모회사 관점에서는 세무신고 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최저한세 추가세액 등을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예측됨

'23년부터 본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향후 해외 신규진출 및 M&A, 국제거래에 있어 글로벌 최저한세가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마찬가지로, 기존 투자 및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담이 발생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 시 지배구조 및 거래구조 개편 등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금번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발맞추어 국내 유보소득합산과세(CFC),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각 기업의 글로벌 유효세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글로벌 세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 환경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해외 세무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진화된 글로벌 세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TAX

2021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2. 1. 6)

202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21일, 28일 공포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입법예고(1월 7일~1월 20일)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2년 2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법인세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자 부담금의 전액 손금산입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시행 관련 제도 보완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인정 • 현실적인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시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근무연수 기산 명확화 • 스팩(SPAC) 소멸합병시 적격합병 요건 구체화 (사업영위요건·주식보유요건·사업지속요건 배제) •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 구체화 (특수관계인간 양수도 + 자산 70% 이전 + 순자산 90% 이전) •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 3년 경과 후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적용시 3년간 의무적용 명확화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규정 정비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시 양도손익 환입 명확화 등)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대상 신설에 따른 구체적 기준 마련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현황자료 범위) • 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기한 연장 (신고기한 이내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

구분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조특법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사업화시설의 범위 및 공제 방법 등 신설 • 탄소중립·미래차·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12대 분야 235개 기술 ⋯› 13대 분야 260개 기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 세액공제 적용시 지분율 요건 및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시점 등 구체화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시 벤처기업 자회사의 범위 신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요건 중 영업이익 발생요건 삭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추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외발생 제작발생 비용 포함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신설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최소 투자·고용요건 신설 (이전본사 투자금액 10억 원 + 근무인원 20명)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법인세액·법인지방소득세 명확화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시 기한요건 완화 (1년 이내 국내 신·증설 ⋯› 2년 이내 국내 신·증설) •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매출액 요건(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삭제 • 첨단기술 전 분야와 화장품제조업 등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 감면 허용
부가세법	•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 신설 • 담보신탁에 대해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의 범위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추가 • 창업기획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의 VAT 면제 적용 • 건물·토지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토지·건물의 안분계산 예외사유 신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 확대 (2억 원 이상 ⋯› 1억 원 이상) •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확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착오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확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 용역의 주선·중개와 직접공급의 착오 등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오류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보관해야 할 거래명세 신설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	:

구분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상증세법	•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규정 구체화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등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 (3월 31일 ⋯› 4월 30일 이내) • 가업상속공제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변경시 가업상속공제 가업 유지로 인정 •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 • 국외주식에 대한 감정기관의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 추가
국조법	•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경제적 모델분석방법 추가 및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설 •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시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포함 근거 마련 •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방법 및 소득 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등 명확화 • 국외재산 증여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2개월 ⋯› 3개월) • 해외직접투자 내국법인의 손실거래명세서 작성 제외대상에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외환차손 추가 •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소득세법	• 근로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에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추가 •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에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및 가상자산 교환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 비거주자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기한 연장 (신고기한 이내 ⋯›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요건 중 연 20억 원 초과 근로대가 기준 구체화 • 채권등의 취득가액 평가방법 일원화 (이동평균법·개별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 ⋯› 개별법) • 금융투자소득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 범위 변경 (전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 등) •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 (의제취득가액 적용·금융회사별 기본공제 분할 적용 등) •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식 정비
:	:

구분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국기법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1일 0.025%:** 연 9.125% ⋯› **1일 0.022%:** 연 8.030%) • 관세·지방세 관련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범위 확대 (3인 이하 ⋯› 6인 이하) • 조세심판관 회의결과에 대한 심판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추가 (심리내용이 기존 판례·심판례와 다른 경우 등)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 허용
종부세법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광역시 등 외 지역 3년)간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세율 적용 •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등 추가 • 공공주택특별법상 임대료 증액이 허용되는 건설·매입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인정

기타 상세한 개정안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참고자료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2. 1. 6.)을 참조하시고,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개정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4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Governance

이사회 운영을 위한 제언

본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에서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16」의 'Excellence Series: 좋은 이사회에서 위대한 이사회로'를 요약한 것입니다.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사이트 참조: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16

1. 전략: 그냥 승인하지 말 것, 측정하고 점검하고 수정할 것

기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경영진의 일이다. 그러나 이사회 감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제대로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여가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채택한 전략뿐만 아니라, 고려되었으나 거부된 전략적 옵션들을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수도 있다. 경쟁 정보(Competitive Intelligence)를 살피고 중·단기보다 멀리 시야를 넓혀야 장기적인 전략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특정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행하는 형식적인 논의로는 충분치 않다. 전략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조기에 적절한 빈도로 알려줄 수 있는 적시성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주주행동주의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사회가 회사의 성과와 전략을 평가할 때, 주주행동주의자의 시각에서도 평가해야 한다. 많은 이사가 회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경쟁사와의 비교를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가 없다면, 문제를 제때 시정할 수 없고 주주행동주의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 **전략: 모범사례**

다각적인 검토를 할 것.

동향을 검토하고, 잠재적인 방해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에서 예정된 주요 거래를 검토하고, M&A 기회와 영향을 평가할 것. 경쟁자, 고객, 투자자, 분석가 및 규제 당국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회사를 바라볼 것.

전략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대시보드와 지표를 사용할 것.

이사회는 진행 상황에 대해 양적/질적 보고를 받아야 함. 사전 합의된 재무 및 비재무 지표와 이정표(Milestone)가 달성되고 있는지 검토할 것.

필요한 경우 경로를 수정할 것.

지표가 전략이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와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경영진에게 요청할 것.

외부의 관점을 고려할 것.

주주행동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 경영진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관점에서 회사의 취약점을 이해할 것. 고려하지 못한 가치와 기업의 각 부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

2. CEO 성과: 성과에 문제가 있다면 변화 필요

이사회의 임무는 회사 전체를 감독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CEO를 선임하고 감독하며 때로는 교체하는 것이다. 올바른 리더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시장 포지셔닝, 강력한 기술, 우수한 제품, 활기찬 회사 문화 등 회사의 다른 면이 완벽하더라도, 잘못된 CEO는 회사를 평범한 기업으로 남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사회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실제로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특정인이 얼마나 잘 해낼지 알기 어렵다. 실패는, 아직 임기를 채우지 않은 CEO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CEO를 너무 오랫동안 자리에 두는 것이다. CEO를 교체하는 것은 과감한 조치이며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너무 오래 지연되면 그 결과는 대단히 심각할 수 있다.

■ **CEO 성과: 모범사례**

솔직하고 도전적인 피드백을 CEO에게 제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이사회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CEO에게 직접적이고 실행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 CEO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공식적인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사회 리더십이 우려 사항, 관찰 내용 및 문제를 종합하여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준비할 것.

조기 경고 신호에 유의할 것.

이사회는 진행 상황과 성과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 특정 시점에서는 더 이상 코칭이 유용하지 않고 리더십 교체로 초점을 돌려야 하는데, 그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 것.

리더십 교체가 필요할 때 이사회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의견을 말하고 행동을 시작할 것.

3. 이사회 구성: 방 안의 코끼리[1]를 관리할 것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수년 동안 이사회 구성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그동안 이사회는 다양성과 역량 집합의 범위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전반적으로 이사회는 10년~20년 전과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사회는 이사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이사를 영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우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평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사회가 이사회 또는 위원회 전체를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솔직한 개별 평가를 회피한다. 평가가 수행될 때에도 피드백이 공유되지 않아서 변화는 거의 없다. 동료애는 종종 변화를 저지한다. 이사회의 각 구성원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이사회와 기업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사회 구성: 모범사례**

개별 이사 평가를 매년 실시할 것.

이사들은 전문가이므로 성과 평가를 받고, 피드백을 받고, 성과 등급을 받는 것에 매우 익숙함. 이사회 의장이나 선임 이사는 각 이사와 일대일 면담을 갖고, 매년 솔직한 피드백을 공유할 것.

솔직한 자기평가를 할 것.

이사회 개별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매년 "내가 여전히 이 이사회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것.

더 짧은 이사회 임기를 적용할 것.

적어도 일부 이사가 5년~7년 후에 종임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설정할 것. 이를 통해 이사회 재구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장려할 수 있음.

1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그 말을 꺼낼 경우 초래될 위험이 두려워, 그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

4. ESG: ESG 열풍에 대비할 것

ESG는 요즘 이사회의 중요한 아젠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사회가 이제 막 이 주제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감독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일부 이사회는 ESG를 전략 및 프로세스에 통합했고, 어떤 이사회는 지속가능성이나 환경 문제와 같은 특정 ESG 주제를 감독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권리나 기업 윤리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할당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많은 주제가 둘 이상의 위원회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이사회에서 ESG 감독에 대해 임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ESG는 크고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잘못된 주제에 집중하기 쉽다. 현재의 어려운 점은 기업과 이사회가 ESG를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의된 프레임워크나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ESG는 대부분의 이사회에서 비교적 새로운 주제이며, 다른 새로운 감독 영역과 마찬가지로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ESG 관련 프로세스는 진화하고 있으며 계속 성숙할 것이다. 또한 감독 당국이 ESG에 관한 새로운 기준에 주목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사회는 ESG 문제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전략과 프레임워크에서 출발한다.

■ **ESG: 모범사례**

위원회별로 ESG 감독 책임을 분배할 것.

어떤 위원회가 특정 문제를 감독하고, 위원회 간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로드맵)을 마련할 것.[2]

ESG 목표를 기업 전략 및 사업 계획에 포함할 것.

기업의 주요 재무 및 비재무 ESG 목표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 전략에 포함하여 사업 계획의 명시적인 부분으로 만들 것.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투자자로부터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업의 ESG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략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2 참고: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Vol.14」, 이사회의 ESG 감독을 위한 가이드

▷▶ 다음 단계의 이사회 과제

□ **감사위원회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할 것.**

수년 동안 감사위원회의 안건은 계속해서 증가함.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면 감사위원회에 감독을 위임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으나 이미 꽉 찬 안건으로 인해 과부하에 걸릴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함. 중요한 감독 영역에서 다른 위원회와 전체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의 깊게 살필 것.

□ **기업문화의 위험신호를 찾을 것.**

기업문화를 측정하고, 이사회가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 관련 지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사회는 각 이사가 보고 듣는 것을 서로 연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는 더욱 난해한 과제임. 방어적인 경영진, 투명성 부족 혹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영진을 찾아낼 것.

□ **다가오는 인재 전쟁에 대비할 것.**

기업이 스스로를 차별화하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해할 것.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목표의 접근 방식과 진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 **사이버 영역에서 앞서갈 것.**

사이버 보안은 이사회의 가장 어려운 감독 영역임.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사이버 전문 지식을 확보할 것. 실질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내부 인력과 제3자(예를 들어, 공급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 **의결권 자문기관을 탐색할 것.**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력과 영향력은 수년간 부침이 있었지만,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주 기대와 안건 설정의 중요한 동인임. 상장기업의 이사가 된다는 것은 의결권 자문기관의 입장과 기업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함.

Hot To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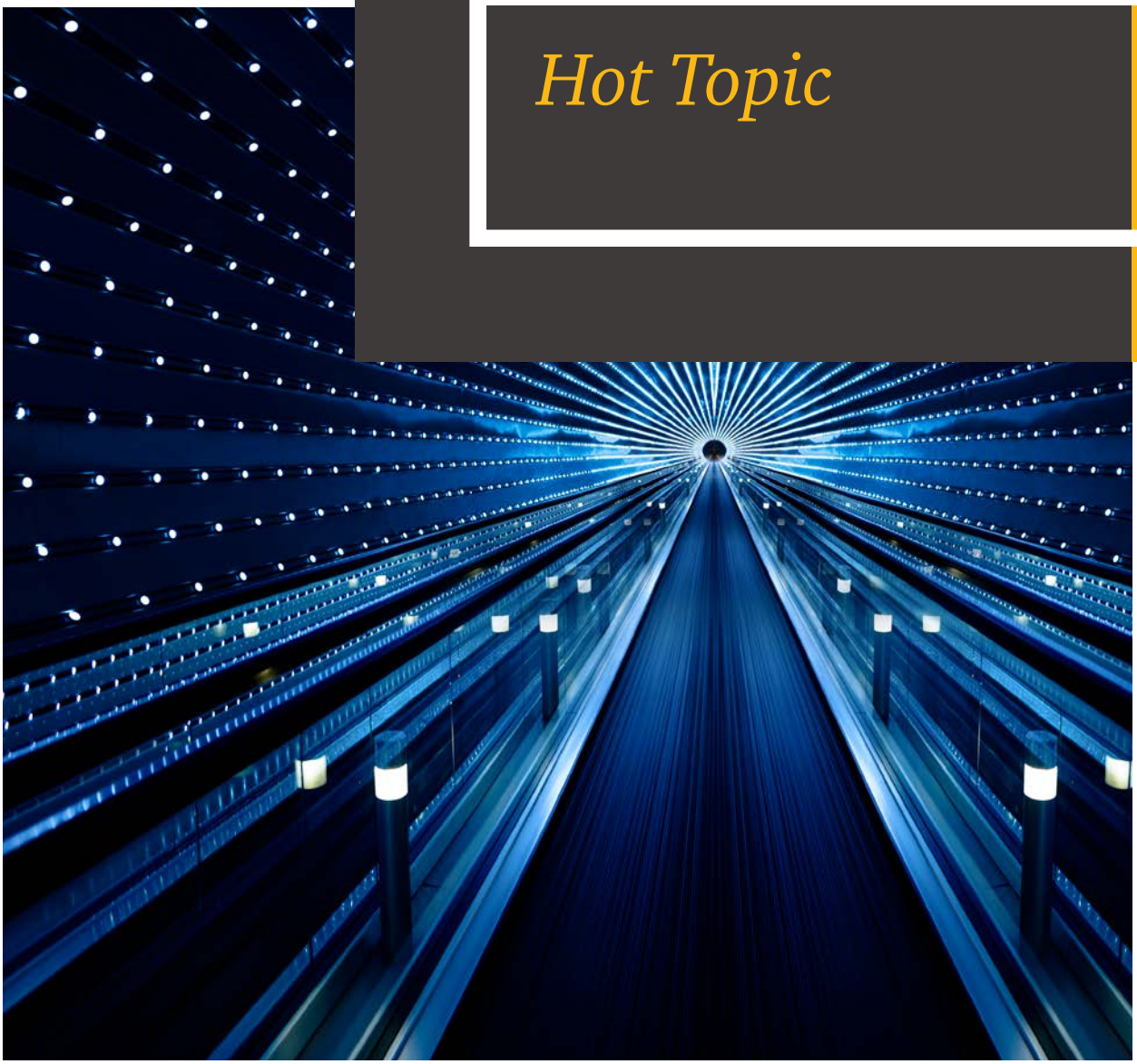

Hot Topic

또 하나의 세상, 메타버스가 다가온다

"Ready Player One"을 기억하시나요?

"2045년. 암울한 현실과 달리 가상현실 오아시스(OASIS)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하다" 2018년 봤던 Ready Player One(레디 플레이어 원) 이라는 영화에 대한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오지 않을 것 같던 가상 세계… 그런데 최근 이러한 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1년 이후 미국 Z세대(1996년~2010년 초반)의 60%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로블록스(Roblox)의 성공적인 뉴욕증시 상장으로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딸이 핸드폰으로 놀고 있는 네이버의 3D 아바타 가상세계 플랫폼인 '제페토'를 보면서 이러한 확신이 더욱 들게 되었다.

1. 메타버스 개요

□ Post-COVID 19는 컨택트 사회로의 회귀가 아닌 가상과 물리공간이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를 견인하고 있음. 메타버스는 **인터넷·모바일을 잇는 차세대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임**

□ 메타버스란 1992년 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 가상(Meta)과 세계(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으로 구축된 또 하나의세계를 뜻함. **초월적인 가상공간(메타)에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콘텐츠가 모이고, 그 안에서 현실 세계(유니버스)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기존의 가상현실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실감기술* 에 의해 허물어지는 세계**를 말함

* 실감기술: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3D 매핑·모델링, 시·청각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실재와 유사한 경험을 가능케하는 일련의 기술을 총칭

앞에서 언급했던 '레디 플레이어 원'은 메타버스를 가장 잘 구현한 사례임. 오아시스라는 가상세계가 존재하고 각종 Hardware (VR 기기, 감각 수트, 360° 트레드밀 등)를 통해 접속 및 플레이가 가능하고 각각의 플레이어들은 아바타가 존재하고 사회적 관계도 오아시스(가상세계) 안에서 형성됨. 심지어 오아시스 안에서 구매한 물건이 현실 세계로 배달되는 등 현실 세계와의 연관성도 높음

• 메타버스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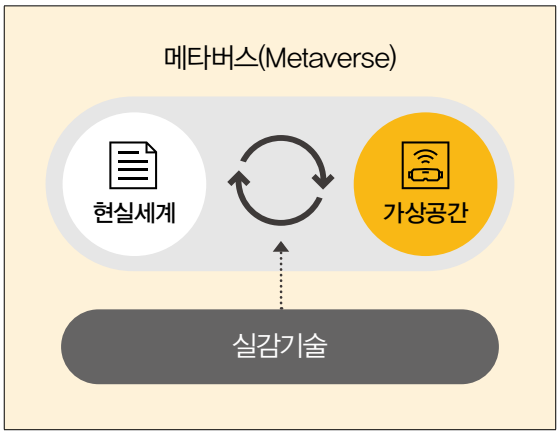

• 전세계 메타버스 관련 시장 성장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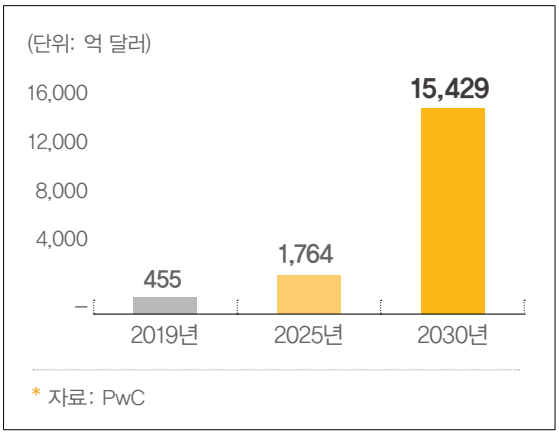

▫ 물론 단기적으로는 완벽한 가상 세계의 구현은 가능하지 않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게임을 비롯한 우리가 이용하는 콘텐츠의 세계가 현실세계를 대체하는 가상세계에 대한 의존도(사용 시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2. 메타버스의 유형

▫ 메타버스는 ① 현실공간에서 2D 또는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②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인 라이프로깅 (Lifelogging), ③ 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인 거울세계(Mirror Worlds), ④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데이터로 구축한 것으로, 3차원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를 총칭하는 개념인 가상세계(Virtual Worlds)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메타버스의 분류

▷▶ 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유형별 융·복합화가 나타나면서 관심이 더 증대되고 있음

• 메타버스 유형별 특징 비교

구분	① 증강현실	② 라이프로깅	③ 거울세계	④ 가상세계
정의	현실공간에 가상의 2D or 3D물체가 겹쳐져 상호작용 하는 환경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 저장, 전송 하는 기술	실제세계를 그대로 투영하는 정보가 확장된 가상세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세계
제공 서비스	현실세계와 판타지, 편의성을 결합한 몰입 콘텐츠 제공	방대한 현실세계의 경험과 정보를 언제든 확인 & 타인과 공유 가능	외부정보를 가상공간에 통합, 확장함으로써 활용성 극대화	다양한 개인들의 활동이 가능한 현실에 없는 새로운 가상공간을 제공
핵심 기술	• 비정형데이타 가공 • 3D 프린팅 • 5G 네트워크	• 온라인 플랫폼 • 5G 네트워크	• 블록체인 기술 • GIS 시스템 • 데이터 및 3D 기술	• 그래픽 기술 • 인공지능 • 블록체인 기술
사례	• 포켓몬고/AR글래스	• 삼성헬스 • 지능형 CCTV • 애플워치	• 구글어스/ 네이버지도 • 에어비엔비 • Zoom 회의실	• 마인크래프트 • 로블록스 • 제페토

3. 메타버스의 발전: 우리 삶 속의 메타버스

□ 최근 재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과거 인터넷의 등장과 SNS시대를 잇는 거대한 흐름임. 연결에 대한 방식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인데 연결의 대상도 확장됨. 인간과 인간의 연결 방식을 넘어 인간과 기계(AI)가 공존하는 세상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음. 5G, XR(VR/AR)의 하드웨어 발달과 함께 몰입감이 극대화될수록 현실에서 가상 세계로의 무게 추는 점차 기울게 될 것이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가상 세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메타버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table>
<tr><th>과거</th><th>현재</th><th>미래</th></tr>
<tr>
<td rowspan="2">□ PC 플랫폼(2000년대): 2D 웹 & 프로필
• 도토리 = NFT/ 미니미 = 아바타
• 확장성(X), 3D(X)
 </td>
<td>□ 모바일 플랫폼: 2D & 프로필
• 카톡 제외 시간차</td>
<td rowspan="2">□ 메타버스 플랫폼 2045년: 3D & 아바타 & 실시간
• 오아시스(가상세계)
 </td>
</tr>
<tr>
<td>□ 메타버스 플랫폼(초기)
게임·SNS·VR 모두 구현된 가상
• 자체 가상통화: '로벅스(Robux)' 거래
• 네이버제트가 개발한 AR 기반 3D 아바타 앱
• 최근 명품 브랜드 구찌와의 콜라보(광고)</td>
</tr>
</table>

- 용어 자체는 새로울 수 있으나 이미 우리 전세대는 경험을 통해 메타버스를 체험한 적이 있음. 1998년 1월, 사이버가수 아담의 활동과 2000년대 한국 SNS의 시초인 싸이월드가 그것임. 싸이월드는 소통 수단을 넘어 아바타와 미니홈피를 꾸미는 것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었는데, 나를 투영한 아바타가 바로 멀티 페르소나(일명 부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공간의 또다른 자아인 내 아바타에게 예쁜 옷을 입혀 주고 좋은 집을 선물해 주기 위해 "도토리"를 모았음. 그때의 도토리는 싸이월드 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화폐로, 현재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전신이라고 생각 해도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과거부터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임

-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메타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음. 게임과 SNS 기업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 우리가 한 번쯤은 접해 보았던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등은 이미 수억 명의 유저를 모으며 현실 세계의 일부 국가나 지역을 넘어서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음. 또한 최근 글로벌로 가상 인플루언서(Lil Miquela, IMMA 등)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은 이미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 속에 친근하게 다가왔다는 증거임.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팬들이 이들이 광고한 제품을 보고 따라 구매하기도 하고, 공개 연애를 응원하기도 하면서 실제 사람과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임. 더 나아가 이들은 앨범을 내거나 자체 브랜드를 런칭해 활발하게 본인의 커리어를 확장시키고 있음. 가상 인플루언서들은 실존하지만 않을 뿐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누리고 있음. **Z세대들은 가상 공간에서 또 다른 자아를 형성해 현실세계 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Z세대에서 급부상하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음

4. 메타버스 생태계의 Value chain: 국내외 기업 현황

- **메타버스 생태계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구성**됨. 그 중 **메타버스 시대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VR 디바이스의 보급**임. 기존에도 소비자에게 VR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었지만, VR기기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시각 등 여러 감각들의 인지 부조화로 인한 멀미,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킬러 콘텐츠의 부재 등으로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고 있어 조만간 대중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글로벌 IT업체들은 **VR디바이스가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새로운 IT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메타(구 Facebook/Oculus), 마이크로소프트(Hololens), 삼성전자, Google(Google Glass), 애플 등도 스마트글래스에 대한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음. 또한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 플랫폼 분야에서도 네이버, 로블록스, 페이스북 등이 시장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커뮤니티, 아바타라는 기본 조건을 넘어 광고, 결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망라하는 거대한 전략적 변화가 시작되었음. 2021년이야말로 메타버스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내의 경우, 디바이스·플랫폼·인프라는 대기업 중심(OEM방식*)으로, 콘텐츠는 중소기업 중심(자이언트스텝, 맥스트, 위지웍스튜디오 등)으로 발전 중임
>
> * OEM업체: 디바이스(아이엠, 선익시스템, 라온텍 등), 인프라(이수페타시스, 케이엠더블유 등)

• 글로벌 VR시장(하드웨어 + 콘텐츠)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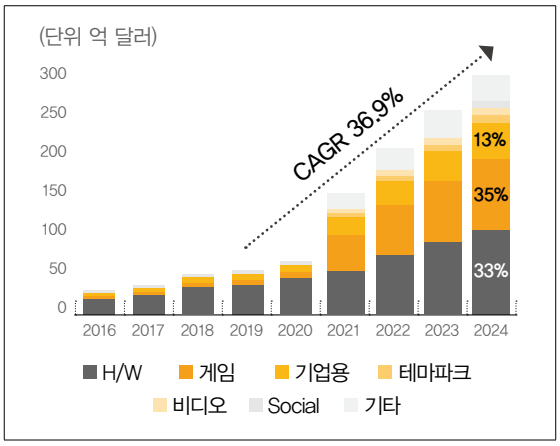

• 주요 VR디바이스(소비자용) 비교

	Oculus Quest2	HTC Vive Cosmos	Valve Index
제조사	Oculus(FB)	HTC	Valve
출시년도	2020	2019	2019
가격($)	299~399	699	999
해상도	1,832 x 1,920	1,440 x 1,700	1,440 x 1,600
무게(g)	503	645	809
주사율(Hz)	72~90	90	80~144

• 메타버스 Value chain

이해관계자	정부 · 기업	개인
Contents (software) **콘텐츠 공급을 위한 수많은 콘텐츠 공급자들** • 콘텐츠 제작: 어도비, 유니티, 오토데스크 등	O	O
Platform **콘텐츠 올라가서 작동하는 플랫폼의 공급자들** • 플랫폼: 알파벳, 메타, 텐센트 등	O	X
Network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 공급자** • 클라우드: MS, 알파벳, 아마존 등 • AI · 보안: Cloudflare 등 • 5G: 버라이즌, 에릭슨, 노키아 등	O	X
Device (Hardware)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고객이 사용하는 장치를 만드는 공급자** • AR · VR기기: MS, 메타, 뷰직스 등 • 반도체: Nvidia, AMD, 퀄컴 등 • 기타: UDC, 루멘텀, 이머전 등	O	X
Client **고객은 (선택한) Device를 통해, (선택한) Network를 이용하여, (선택한) Platform에서 (선택한) Contents를 최종 소비**	O (B2B/B2G)	O (B2C)

소셜미디어, 게임, 이커머스, 원격근무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중

▫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는 분명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산업에 많은 변화들이 수년내 이루어질 것임. 5G에 대한 투자 역시 촉진시킬 것임. 현재는 가장 적용이 쉬운 '게임'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국가 전략산업 분야(제조, 의료, 건설, 교육, 방송, 국방)**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엔터테인먼트, 금융 등)**으로,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메타버스가 가진 무한한 확장성에 국가차원에서도 집중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Z세대' 및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탄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임

- 2021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민관 협의체) 구성
- 디지털 뉴딜2.0의 핵심과제로 메타버스 선정: 2025년까지 예상투자액은 49조 원

• 메타버스플랫폼(로블록스) vs. 모바일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유저 연령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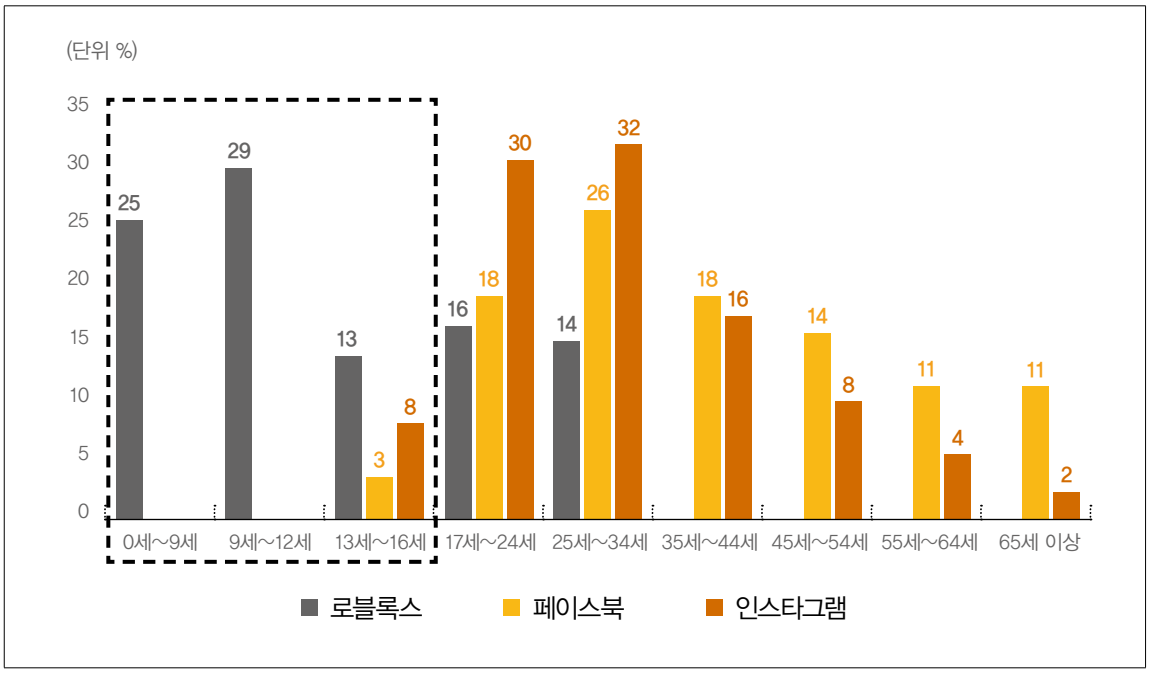

Contacts

GAAP

이 수 미, Partner

+82 2 3781 9548
sumi.lee@pwc.com

GAAS

성 현 주, Partner

+82 2 3781 9252
hyun-joo.sung@pwc.com

TAX

최 혜 원, Partner

+82 2 709 0990
hyewon.choi@pwc.com

Governance

하 미 혜, Director

+82 2 709 8599
mihye.ha@pwc.com

SRC

이 은 영, Director

+82 2 709 0824
eunyoung.lee@pwc.com

삼일회계법인 공식 YouTube 채널
바로가기 Click

삼일 전문가들의 Insight와 최신 업계 동향,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삼일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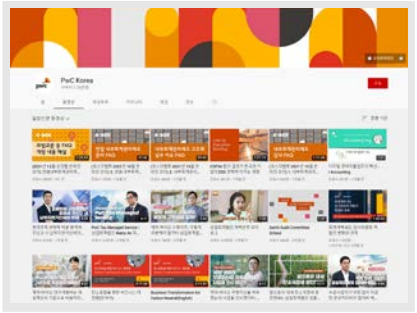

www.samil.com

S/N: 2201A-NL-001

© 2022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